

제공일자	2015. 2. 3(화)	담당자	오승연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02-3775-9115)	연락처	02-3775-9036
			총3매

제목 : 존엄사의 점진적 입법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존엄사 법제화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 필요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의 오승연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은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고령화리뷰 제4호 테마진단).
-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말기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에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존엄사 법제화**가 진행 중임.
 - *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2009년 5월 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짐.
 - ** 정부는 2012년 12월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5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함.
-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존엄사 법제화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 마련을 통해 이루어졌음.
 - (환자의 객관적 상태에 관한 요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으로 ‘회복불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음.
 - (환자의 의사표명과 관련된 주관적 요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의미하는데,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고 의사가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조치는 불법화 할 수 있음.

- **(요건판정 및 시행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인에 따른 존엄사 남용위험이 클 수 있어, 존엄사 실행 이전 충분한 사전적 통제를 시행하는 미국 방식이 적합함.*

* 절차적 요건은 나라별로 다른데 네덜란드는 사후적 규제를, 미국은 사전적인 통제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먼저,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의 전제하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임.
 - 회복불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살과의 경계가 애매해질 수 있음.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보다 확대시켜야 함.
- 존엄사 문제는 환자의 자기결정 의사표명을 바탕으로 하는 민사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이기에 형사법과 관련이 있어 필히 **민사법과 형사법을 함께 개정**해 나가야 할 것임.
- 존엄사 입법화는 이를 보완하고 병행하는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남용방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함.

□ 존엄사 법제화 시행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존엄사 법제화는 보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존엄사를 어떤 사망의 범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음.
- 존엄사의 경우 본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우연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현행 상법 638조 및 보험업법 2조 1호에 따르면, 보험 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면책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존업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국가말기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존업사에 대해서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상법 638조 및 보험업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존업사가 “우연한 사고”의 예외로 인정될 경우에는 질병에 의한 일반사망에 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첨부 : 테마진단 “존업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